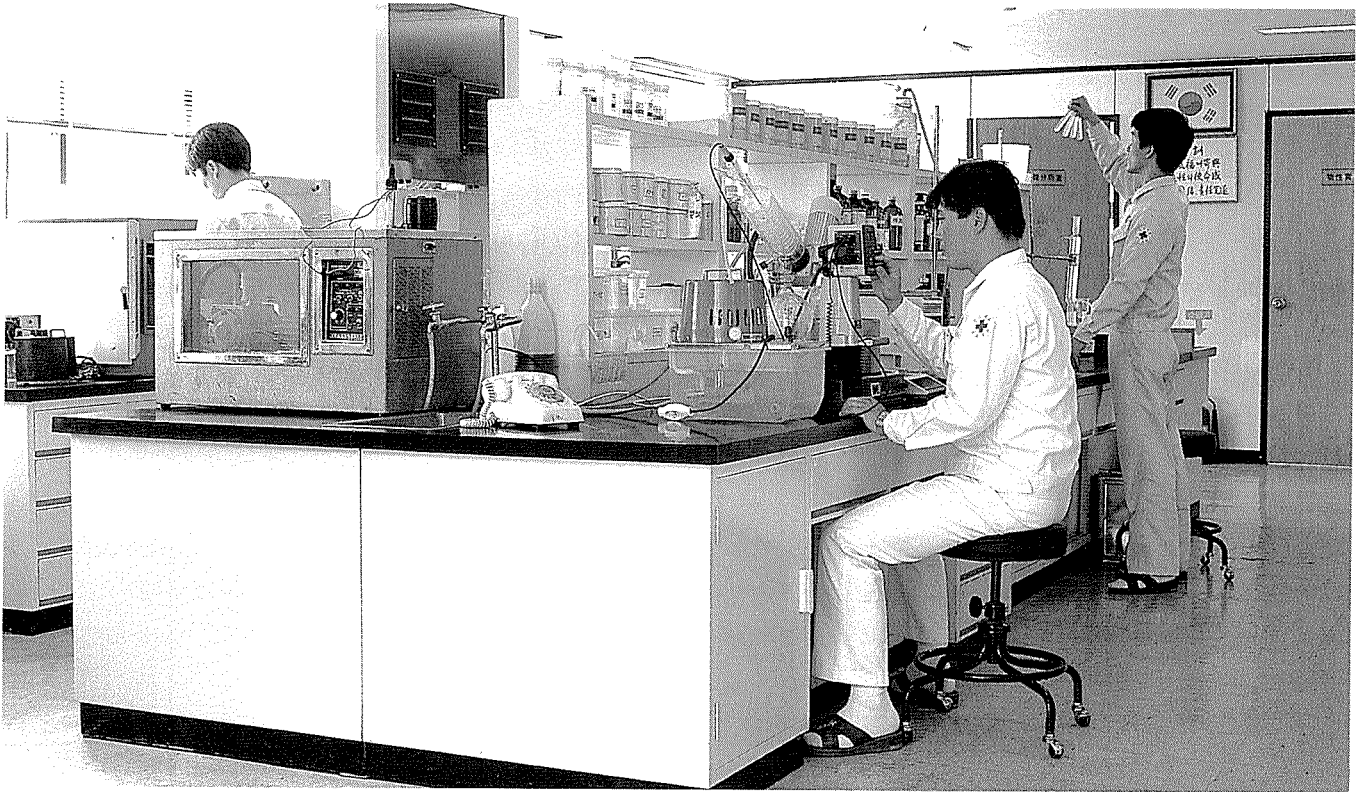


금년 10월 시행 될 예정인 식품회수제는 제도상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 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를 비롯 소비자 등 각 해당 주체들을 위한 단계적 개선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따라 식품업계에서는 영세한 유통구조를 벗어나 유통 전산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호에 이어 식품회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집중분석! 식품회수제 벗겨보기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그 절차(Ⅱ)

식품회수제의 실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정부측면에서는 과학적인 근거제시 능력과 위해식품의 신고체계 확립, 식품제조 및 유통업자간의 회수식품 책임설정, 회수적용범위, 수입식품의 유통관리와 수입업자의 관리 등이 있고 식품업체의 경우는 회수팀 운영 등 업체의 회수대책마련과 제조일자·유통기간·로트번호 등의 코드화, 국내 식품산업구조의 영세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회수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유통 판매업체의 경우 영세한 구조로 식품취급 등, 인식이 부족하고 전산화 미비, 무자료 거래, 콜드체인 구축 미비, 냉장·냉동 탑차 등의 자동온도 기록장치 관리의 부족 등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식전환과 정보수집체계 강화가 선행돼야

한편, 식품회수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첫째, 영세한 유통구조 개선과 정비를 위한 정부부처간의 협조체계 구축과 회수 전담 부서 설치, 제조·유통업체의 회수 실시를 위한 지침서 개발 및 교육·홍보 강화.

둘째, 수입업자 관리 수출국의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기록 제시요구 등 수입업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셋째,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유지를 통한 정보수집체계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식품업체 측에서도 제조공정별 기록 등 관리상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유통 시켜 자사(自社)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 측면에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것. 또한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공급 및 수요자의 인식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회수기준 설정, 식품 제조업체 및 유통판매

업자 그리고 실수요자인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식품회수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 식품회수 책임소재와 원인규명 등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 마련도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 회수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지원과 그에 따른 지문기구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품회수제도가 본래의 취지처럼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업체 및 유통판매업자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회수 계획프로그램을 설정·운영해야 하며 수입원 부재료 및 각종 식품도 국내 식품과 같이 효율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현실적인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각 품목별 위해(危害)를 평가할 안전 기준을 수립해야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정보 관리를 위하여 위해정보의 온라인 전산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획득과 차후 배상책임 등의 위험 방지효과

소비자보호원은 현행 회수제도가 각각 근거법률과 상이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신규개발 품목의 누락 등 회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은 소비자제품 안전법 등으로 회수관련 단행법을 두고 있는데 우리도 장기적으로 회수제도 전반을 품목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정하여 운영케 하는 단일법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소보원 관계자는 회수제 지원 측면으로 결함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을 때 상품의 결함만 입증되면 제조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바로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해당 피해자 다수가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이 경우 제조물책임법과 집단소송법의 도입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촉진 효과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호주 등 회수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국가는 제조물책임법을 병행 실시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는 위해성이 심각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속한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회수 대상 제품가격의 2~5배까지 현금을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회수제품은 불량품이라는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사업자들의 피해의식으로 회수의 기피 또는 비공개 회수를 초래하는 경향이 높은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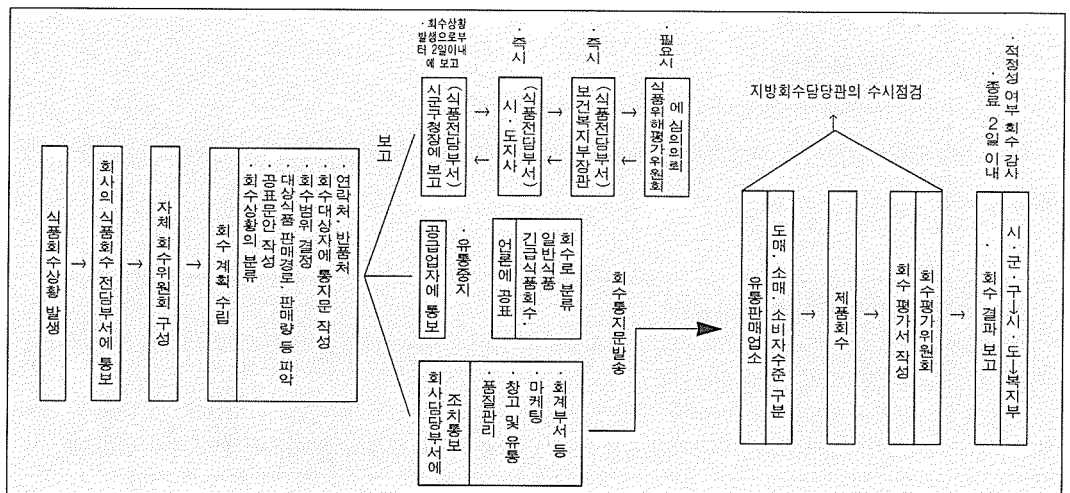
따라서 소비자는 회수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품질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사업자 또한 결함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획득과 차후 배상책임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폭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

회수제 지원 측면으로 결함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을 때 상품의 결함만 입증되면 제조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바로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의 피해를 해당 피해자 다수가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회수 절차는 바로 이것

금년 10월 식품회수제도 시행에 따라 식품제조업계에서 준수해야 할 회수절차와 영업자의 임무에 대한 교육이 지난 5월 16일 한국식품위생연구원에서 있었다. 이를 발췌, 알기쉽게 정리해 본다.

1. 식품회수절차



2. 회수시행시 영업자의 임무

자진회수와 강제회수의 회수절차는 기본적으로 같으며, 위 절차에 따라 영업자가 시행하는 회수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회수계획 수립

회수상황 발생시 회수대상식품의 유통을 중지시키고 회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체 회수위원회 구성
- 위해발생의 확인과 회수상황 분류
- 회수대상식품의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회사(수입식품의 경우는 수입회사 포함), 판매경로, 판매량
- 회수공표방법의 확립과 회수공표문 및 회수문 작성
- 회수평가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회수계획 보고

영업자는 회수상황 발생 2일 이내에 회수계획을 지방회수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받은 지방회수담당관은 이를 중앙회수담당관에 보고하고, 중앙회수담당관은 회수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③ 회수의 실시

회수계획의 보고와 동시에 회수범위를 결정하고 회수대상자 등에게 회수계획 및 회수문을 통지한다.

회수범위는 회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A>의 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회수상황 발생후 2일 이내에 2개이상 중앙일간지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1개이상 방송에 회수공표문을 게재하고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문을 발송한다. 또한 회수광고의 표제에는 '긴급식품회수' 또는 '일반식품회수' 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수된 제품은 지방회수담당관의 감독하에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④ 회수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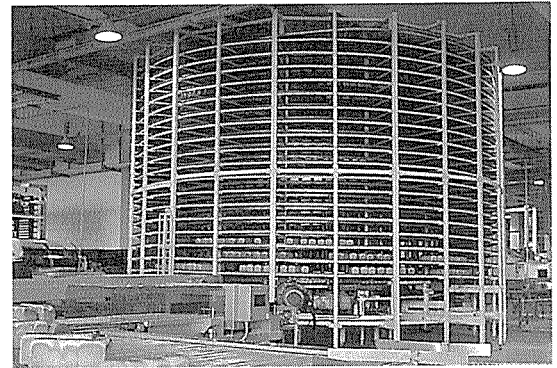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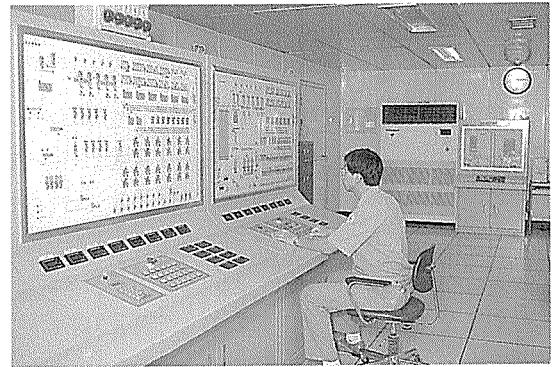
영업자는 회수를 종료한 후 유통량 대비 회수실적 등을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회수결과의 보고

영업자는 회수가 완료된 후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회수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회수담당관은 이를 중앙회수담당관에게 보고하게 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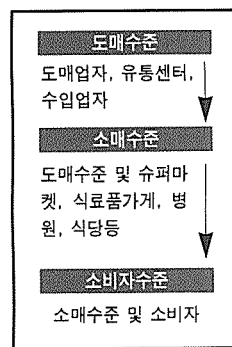
- 회수 공표문 및 회수문 사본
-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 원고 분량 관계로 2회에서 총 3회로 늘렸음을 밝히며, 다음 10월호에서는 '회수제도 시행에 따른 식품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과점에서도 제조과정상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A> 회수범위



- 회수상황 발생시 사업자는 회수대상식품의 유통을 중지시키고 회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는 자체 회수위원회 구성, 위해발생의 확인과 회수상황 분류, 회수대상식품의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회사, 판매경로, 판매량, 회수공표방법의 확립과 회수공표문 및 회수문 작성, 회수평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겨울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월간 베이커리>에서는 지난 5월호부터 '확대경'란을 신설, 제과업에 종사하는 독자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베이커리 및 식품 관련 이슈들을 집중 분석, 해설 해 왔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요구에 더욱 부응코자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보를 받습니다. 꼭 알고 싶은 내용이나 다뤘으면 하는 기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주저 말고 본지 독자엽서를 이용하거나 편지 및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